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59호 2013년 3월 27일(수)

공 고

○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함(안 제4조)
- 나. 도로신설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 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도로 및 유형별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 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가로수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
- 마.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도시림조성 법인등록업체,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18조)
- 바. 가로수 훼손시 훼손자의 부담금과 사업시행시 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공원녹지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공원녹지담당(전화: 033-639-2197,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정병선(전화:033-639-21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관리부서"란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바뀌심기"이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 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5.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1년 이내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 및 활착에 지장이 없을 것

제6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신설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 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도로에 인접한 대지가 건축허가 등을 수반할 경우 대지안의 조경식재 수종을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
5.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6. 그 밖에 관련법령,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하여야 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도에 접한 보도에 식재 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폭에 따

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목의 식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③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으며, 동일수종의 군식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상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④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⑤ 새로 신설 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⑥ 가로수는 별표 3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규격에 맞게 식재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 불량 등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9. 그 밖에 바뀌 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뀌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視界)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아닌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돌발 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리부서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 단목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 관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시설물) ①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시설물은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관리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관리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최소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 · 바뀔심기 ·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7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이 가로수의 관리에 참여 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 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 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변에 주차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식재·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제6호에 따른 도시림조성 법인등록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제3호 따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법 제21조 및 「도로법」 제 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리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조례, 속초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현지여건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장은 원인자가 사업 시행시 사업 승인조건이나 관련 규정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후 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담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 되었을 시 반환한다.

다만,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상실(수관 3분의 1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 시킨다.

⑧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7의 비용부담 산정 기준에 따른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 직경의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⑨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관리대장)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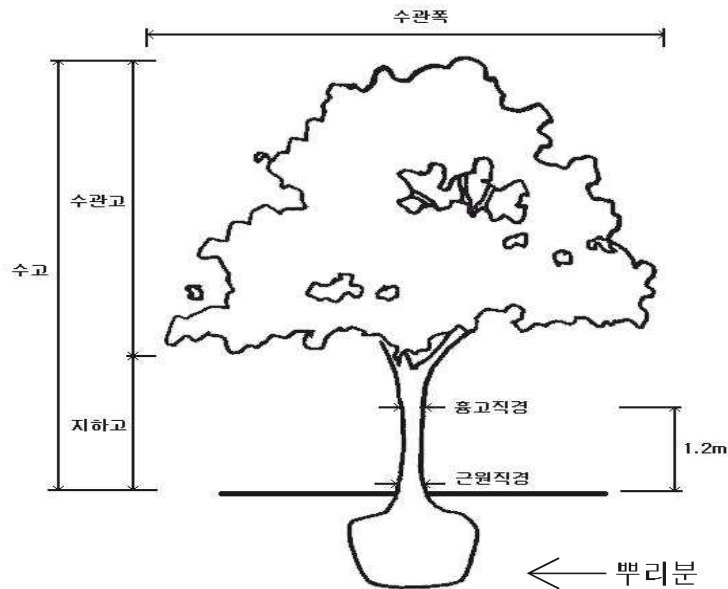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본 조례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제3조 제9호 관련)



- 수고(樹高) :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수관고(樹冠高) :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지하고(枝下高) : 지표면에서 역지(力枝)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흉고직경(胸高直徑)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根元直徑) :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 수관폭 :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분(뿌리분) : 나무의 뿌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흙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9조 제1항, 제5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3]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9조 제6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cm이상, 근원경 18cm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식재 가능하며, 수목의특성상 10%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5cm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별표 4]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앓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5]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4조 제1항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살포	1화기 : 6월 상순 2화기 : 8월 초·중순
항철나무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사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5월 하순 ~ 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만코지 수화제 살포	1화기 : 5월 초·중순 2화기 : 9월초 ~ 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잎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버즘나무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 5월 하순 ~ 6월 초순 - 나무주사 : 6 ~ 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잎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응애류	벗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6]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6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7]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20조 및 제21조 관련)

피해발생의 경우	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시장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시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시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승인신청서(제21조 제2항관련)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월 년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승인서(제21조 제3항 관련)

승인자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대상	가로수위치						
	수종		규격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작업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월일		일부터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첨 부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3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 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좌우측				연장				m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m 우측보도: m							
최초조성		/ / 부터		/ / 까지		준공일자		/ /		사업비		천원		시 공 자									
수	종	식재본수 (본)	수고 (m)	흉고직경 (cm)	근원직경 (cm)	수관폭 (cm)	수령 (년)	식재위치	식재거리 (m)	식재간격 (m)	식재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수 종					가로수 변동사항(본)																가로수 관리사항(본)								점검 확인			비 고	
						증가내역								감소내역																				
	연월일	계	은행	해송	히말라야시다	느릅	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하자보식	기타	계	자연고사	인위피해	교통사고	갱신제거	지장이식	지장제거	갱신제거	기상피해	기타	계	가지치기	방제	비료주기	토양개량	외과수술	관수	기타	담당	계장		과장
/ /																																		

관리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지주대				보호대				기타()				기타()				기타()				점검확인			비고	
	연월일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담당	계장		과장
/ /																																	